



CIRCUIT ORPHANS' COURT FOR \_\_\_\_\_, MARYLAND

순회법원

고아법원

City/County

도시/카운티

메릴랜드

Located at \_\_\_\_\_ Case No. \_\_\_\_\_

Court Address

위치:

법원 주소

사건번호

In the Matter of

관련당사자

\_\_\_\_\_  
Name of Minor or Alleged Disabled Person

미성년자 또는 주장되고 있는 장애인의 성명

\_\_\_\_\_  
Docket Reference

사건기록부(Docket) 참조번호

**NOTICE TO INTERESTED PERSONS**

**(Md. Rule 10-203 (d))**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지**

**(메릴랜드 규칙 10-203(d))**

A petition has been filed seeking appointment of a guardian of the person of

\_\_\_\_\_, who is alleged to be a minor or disabled person.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라고 주장되는 사람 \_\_\_\_\_의  
후견인(guardian)을 임명하고자 하는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You are an "interested person," that is, someone who should receive notice of this proceeding because you are related to or otherwise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this person.

귀하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즉 귀하는 이 사람과 관련이 있거나 이 사람의 복리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한 고지를 받는 것입니다.

If the court appoints a guardian for the person, that person will lose certain valuable rights to make individual decisions.

법원이 이 당사자에 대한 후견인을 선임할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귀중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Please examine the attached papers carefully. If you object to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please file a response in accordance with the attached show cause order. (Be sure to include the case number). If you wish otherwise to participate in this proceeding, notify the court and be prepared to attend any hearing.

첨부된 서류를 주의깊게 살펴보십시오. 귀하가 후견인의 선임에 반대할 경우, 첨부된 사유 진술명령서(show case order)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십시오. (사건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십시오). 귀하가 다른 방법으로 이 절차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 통지를 하고 청문에 출석할 준비를 하십시오.

Each certificate filed pursuant to Rule 10-202 that is attached to the petition will be admissible as a substantive evidence without the presence or testimony of the certifying health care professional unless you file a request that the health care professional appear to testify. The request must be filed at least ten (10) days before the trial date, unless the trial date is less than ten (10) days from the date your response is due. If the trial date is less than ten (10) days from the date your response is due, the request may be filed at any time before trial.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규칙 10-202 에 따라 제출되는 각 증서는, 의료종사자가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입증하는 의료종사자의 출석이나 증언 없이도 실체적 증거로서 허용됩니다. 재판일이 귀하의 답변 마감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를 재판일로부터 최소한 10 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일이 귀하의 답변 마감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재판일 전 아무 때에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If you believe you need further legal advice about this matter, you should consult your attorney.

이 사안에 대하여 법적 조언이 더 필요하실 경우, 귀하의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